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8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호, 2015. . 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감축되는 인력 8명(5급 5명, 6급 2명, 8급 1명)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고, 국제금융정책국의 과 간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,

기획재정부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4명을 감축하고, 행정주사보 3명 및 행정서기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5.12.~ 2015.12.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에 관한 사항

별표 1 중 총계 “970”를 “96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960”을 “952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376”을 “371”로, 행정주사 “146”을 “144”로, 행정주사보 “28”를 “31”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14”를 “10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967”을 “95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957”을 “949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계 “397”을 “392”로, 행정주사 계 “129”를 “127”로, 행정주사보 계 “26”를 “29”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14”를 “1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획재정부 정원 8명(5급 5명, 6급 2명, 8급 1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시행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국제금융정책국) ① ~ ② (생략)	제17조(국제금융정책국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7.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에 관한 사항</u>	< 삭제 >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< 신설 >	<u>15.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에 관한 사항</u>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970	<u>962</u>	-8
·	·	·	
·			
일반직 계	960	<u>952</u>	-8
·			
·			
행정사무관	376	<u>371</u>	-5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146	<u>144</u>	-2
·			
·			
행정주사보	28	<u>31</u>	+3
·			
·			
사무운영서기보	14	<u>10</u>	-4

[별표 1의2]

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967	<u>959</u>	-8
·	·	·	
·			
일반직 계	957	<u>949</u>	-8
·			
·			
행정사무관	397	<u>392</u>	-5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129	<u>127</u>	-2
·			
·			
행정주사보	26	<u>29</u>	+3
·			
·			
사무운영서기보	14	<u>10</u>	-4